

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 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 (휴대전화번호: 전자우편주소:)		
	① 근무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	② 청구 구분	[]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[]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[] 판결등에 따른 청구 []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	
	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	원	
	④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(사업주 지급금, 퇴직연금,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· 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) 원 가.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,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? 나.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,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· 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?	[] 예 [] 아니오 [] 예 [] 아니오	
	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. 최종 3 개월분(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 개월분)의 임금 · 휴업수당 ·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: 원 나. 최종 3 년간의 퇴직급여 등(퇴직자인 경우): 원		
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	⑦ 대지급금 지급(일부지급 제외)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원 [] 문자메시지 [] 우편		

⑧ 임금 의뢰	입금은행	예금주	계좌번호	일반계좌 [] 압류방지 전용계좌 []
	*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			

⑨ 대상 사업주	사업장명	대표자 성명
	소재지	

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, 제 7 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첨부 서류	판결등에 따른 청구	1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국판결,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 증명원정본 또는 사본 가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가 목에 따른 중국판결 나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다 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마 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.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	수수료 없음
	체불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	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 9 조의 2 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	

자료제공 요청 동의
본인은 귀 기관이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23 조제 1 항제 6 호 · 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「법률구조법」 제 8 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26 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「보험업법」 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공지사항

1.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지급받은 경우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14 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 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 28 조 1 항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, 근로복지공단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의 한도에서 청구인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, 민사소송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과정에서 주장했던 임금등 제물액이 민사소송 등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“근무기간”란에는 간이대지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적습니다.
 2. ②“청구 구분”란 중 “퇴직자 대지자금 청구”란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자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, “재직자 대지자금 청구”란은 같은 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자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.
 3. ③“청구 구분”란 중 “판결등에 따른 청구”란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(같은 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서 제 7 조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)에 따라 확정 판결등으로 간이대지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,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”란은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5 호(같은 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서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)에 따라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.
 4. ③“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”란에는 “판결등에 따른 청구”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해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고, “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”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습니다.
 5. ④“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자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”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 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
다.
 6. ⑤ 란의 가. “최종 3 개월분(재직자의 경우 소속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 개월분)의 임금 · 휴업수당 ·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”는 간이대지자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,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 개월(재직자의 경우 소속등 또는 진정등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 개월)에 해당하는 임금 · 휴업수당 ·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.
 7. ⑤ 란의 나. “최종 3 년간의 퇴직급여등(퇴직자인 경우)”은 “퇴직자 대지자금 청구”란에 표시한 근로자에 한하여, 간이대 지자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,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 년간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등을 말합니다.
 8. ⑥“지급받아야 할 대지자금”란은 ⑤란의 “가” 와 “나”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. 다만,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대지자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지급 받게 될 대지자금의 금액이 됩니다.
 9. ⑦“대지자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”란은 대지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이 통지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(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시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).
 10. ⑧“입금의뢰”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간이대지자금의 입금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 만약 간이대지자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 (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11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금수금계좌)로 입금받기를 희망 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금수금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.
 11. ⑨“대상사업주”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소재지를 적습니다.
- ※ 간이대지자금 지급청구서는 판결등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 7 조제 1 항제 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,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·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청구인	처리기관(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· 지사)
▼ ▲	청구서 작성 ▶ 근로복지공단 은행 결재 (예금계좌) (본부장 · 지사장)